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7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204393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음 담당변호사 이태현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12. 19.
판 결 선 고	2025. 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44,132,9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7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방문판매업 및 통신판매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원고의 판매원 영업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영업관리규정'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영업관리규정

1. 본 관리규정은 원고가 승인한 Repove Seller(이하 “판매원”)들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기한 것이다.
2. 본 관리규정은 타 규정과 함께 판매원 자격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된다.
3. 당사의 판매원들이 본 관리규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회사는 규정을 위반 한 판매원에게 경고, 자격의 정지 및 해지 등 판매원에게 부여한 일체의 권리를 제한 또는 상실케 하는 권한을 보유한다.

제33조 대중매체 광고 및 이를 통한 판매행위

② 상품 도매행위

회사의 모든 판매원은 상품을 회사로부터 직접 구매하여야 하며,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상품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

③ 상품 변경 및 재포장 금지

1. 판매원은 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상품의 내용물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으며, 상품의 포장을 개봉하거나 훼손하여 판매할 수 없다.
2. 상품 및 그 포장에 명시된 사항이나 라벨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으며 또한 회사에서 공급하는 제품을 회사의 보너스제도나 판매 방식을 벗어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없다.

④ 인터넷 사이트 관련 행위 금지

1. 판매원은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 또는 판매원 모집유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상품판매가격 유지

1. 회원가 및 소비자가 이외의 비정상적인 가격으로서 온라인 매체 또는 대면 판매를 통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7

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는 'C' 또는 'D'이라는 상호로 각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E', 'F'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G' 등 원고의 제품인 화장품을 위 사이트에서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후원방문판매업을 하면서 그 소속판매원들에게 원고 제품의 직접 판매(온라인 판매금지)를 조건으로 제품의 구매가격의 42%~48.5%의 금액을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판매하는 제품들이 모두 후원방문판매의 방식으로만 판매되고 있고 원고가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면서 방문판매 외의 재판매를 금지하고, 별도로 소매 판매 및 원고 소속 판매원이 아닌 자를 통한 인터넷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원고 소속판매원들과 공모하여 '방문판매의 방식으로 정상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후 해당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이렇게 취득한 원고의 제품을 온라인에 염가 판매하는 판매행위를 하여 원고의 영업행위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성명불상 판매원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수령한 후원수당 1,544,132,9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7

나.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5, 16호증, 을 제1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원고의 화장품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성명불상 판매원과 공모하여 정상 판매를 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을 편취하였다거나 업무방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는 그 소속 판매원을 통하여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원고의 제품을 판매하고, 이 사건 영업관리규정에 의하면, 원고 소속 판매원은 상품 도매행위, 온라인 상품 판매 행위 등이 금지되므로, 원고의 소속 판매원이 아닌 피고로서는 결과적으로 원고 소속 판매원으로부터 원고의 상품을 공급받아야만 이를 판매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위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 소속 판매원과 공모하여 원고의 제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원고 소속 판매원과 공모하여 직접 이를 판매하지 아니하여도 이 사건 영업관리규정을 어겨 상품 도매행위를 하는 원고의 판매원으로부터 단순히 매수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원고의 판매원으로부터 원고의 상품을 대량으로 매수한 제3자로부터 원고의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재판매할 수도 있다. 피고는 원고의 제품을 정상가에 구입한 후 다른 제품과 끼워 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서도 원고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소속의 특정 판매원과 공모하여 그로부터 원고의 제품을 공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7

2) 원고는 그 소속 판매원을 통하여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원고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판매원에게 방문판매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판매를 통한 판매원의 마진 등을 공제한 제품 가격으로 이를 공급하고, 판매원의 직급별 판매 실적에 따라서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원고는 피고가 판매원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후원수당으로 이윤을 얻기 위하여 공모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 판매원으로부터 후원수당을 나누어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판매원은 피고와 공모하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후원수당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영업관리규정을 어기고 저렴한 가격으로 피고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원고의 판매원 중 누가 이와 같은 재판매행위를 하여 후원수당을 편취하였는지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가 2021. 1. 26. 인터넷 E 스토어 'D' 사이트를 통해 책임판매업자[1]를 표기하는 QR 코드가 제거된 원고의 제품인 'I'을 판매한 범죄사실 등의 화장품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벌금 5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2]은 인정된다. 그러나 화장품법은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위 화장품법 위반죄의 근거인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제4호[3]은 거래의 투명성 확보, 소비자 보호 등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에 해당하고 판매업자의 사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위반사실 자체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어떠한 법익을 침

1) 이 때 책임판매업자는 원고를 말한다.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정484, 부산지방법원 2022노1726, 대법원 2023도6809.
3) **화장품법 제16조 (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한다.
4.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맞춤형화장품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위조·변조한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7

해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4].

4) 방문판매법 등 관계법령은 원고 상품의 재판매행위를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피고와 원고는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다. 피고가 원고 제품을 판매하면서 QR 코드를 제거하는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 제품의 유통과정을 알면서도 온라인에 재판매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정만으로 더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특정 판매원과 후원수당을 편취하고자 공모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피고가 원고의 특정 판매원과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공모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한편, 원고는 피고가 저작자인 원고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당 제품의 이미지, 성분, 기능 등을 담은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시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데, 원고가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상품사진 등은 해당 상품의 구성과 내용에 관한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표현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전달과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에서 촬영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서 보호될 정도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제품의 성분 등을 표시한 상세내역 표시문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원고는 포장 훼손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화장품법을 위반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되는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상품판매를 위해 게시한 글에 의하면 사후에 표시가 제거된 상품을 보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오인 가능성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7

재판장 판사 채성호

판사 박소민

판사 배종빈